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 임기는 위촉일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중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성체육공원

제3조제1항중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비고1항중 “소인(13세이하)”를 “65세 이상의 자와 소인(13세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재정지원대상)”을 “(재정용자대상)”으로 하고, 동조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재정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안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정보조대상)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재정용자대상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